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1. 5. 16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4월 26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5월 6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1. 5. 11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정희)

가. 제안이유

- 정원 1,274명 범위내에서 효율적 조직 운영과 정원 관리를 위한 직군별 정원 조정
- 소멸 정원인 지도직 등 기능직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원과 현원보다 초과되어 있는 일부 직렬 정원을 조정

나. 주요골자

- 제3조(정원책정기준) [별표 2]의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고 기능직 및 별정직 일부 직급 통합 운영
- 제3조(정원책정기준) 승진이 정채되어 있는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상향
- 제4조(직급별 정원) [별표 3]의 일반직 6급이하 정원 15명 증원 및 기능직 정원 13명 및 별정직 정원 2명 감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이 현 영)

-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 1,274명 범위내에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하는 기능직 공무원과 현원보다 초과되어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- 정원의 관리는 대통령령인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 정원의 관리, 제29조 직급별 정원 및 제30조 정원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.
-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3조 별표2에서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 정원 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고 기능직 9급과 10급 및 별정직 8급상당과 9급상당을 통합하여 정원을 책정하도록 변경하여 2011. 5월 현재 기능직 공무원 현원 총 253명 중 6급 11명 4.3%, 7급 40명 15.8%, 8급 177명 70%, 9급 25명 9.9%로 8급 이하가 전체의 80%를 차지하여 승진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음.
- 안 제4조 별표3에서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6급이하 정원 15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 13명과 별정직 정원 2명 감원한 것은 소멸 정원인 기능직 중 지도직등의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되는 기능직공무원과 현원보다 초과되어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였음.
- 위 개정조례안은 6급이하의 승진적체로 인한 근속승진등에 따른 증원과 소멸되는 기능직등의 감소분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날로 증가하는 복지·보건·기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업무의 합리적 배분과 직무의 전문화 및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어야 하며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49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정원 1,274명 범위내에서 효율적 조직 운영과 정원 관리를 위한 직군별 정원 조정
- 소멸 정원인 지도직 등 기능직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원과 현원보다 초과되어 있는 일부 직렬 정원을 조정

2. 주요내용

가. 제3조(정원채정기준) [별표 2] 의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채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고 기능직 및 별정직 일부 직급 통합 운영

나. 제3조(정원채정기준) 승진이 정채되어 있는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직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비율 상향

다. 제4조(직급별 정원) [별표 3] 의 일반직 6급이하 정원 15명 증원 및 기능직 정원 13명 및 별정직 정원 2명 감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(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련부서와 협의 되었음

라. 기 타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- 입법예고(2011. 4. 7 ~ 4. 18, 10일간)결과 : 의견없음
-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사무 없음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와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2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

-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기준비율	1%이내	7%이내	21%이내	31%이내	29%이내	11%이상

- 비고 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, 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 2.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- 기능직

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
기준비율	5%이내	20%이내	56%이내	19%이상	

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- 별정직

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기준비율	0%	38%이내	38%이내	24%이상	

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계	1,274	1,274			
정무직	1	1			
일반직계	1,019	1,019			
3급	1	1	-	-	-
4급	7	5	1	1	-
5급	60	29	2	11	18
6급이하	951	951			
별정직계	11	11			
기능직계	243	243		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</p> <p>- 일반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 분</th> <th>4급이상</th> <th>5급</th> <th>6급</th> <th>7급</th> <th>8급</th> <th>9급</th> </tr> <tr> <th>기준비율</th> <td>1%이내</td> <td>7%이내</td> <td>21%이내</td> <td>32%이내</td> <td>27%이내</td> <td>12%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, 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.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- 기능직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 분</th> <th>6급</th> <th>7급</th> <th>8급</th> <th>9급</th> <th>10급</th> </tr> <tr> <th>기준비율</th> <td>4%이내</td> <td>12%이내</td> <td>50%이내</td> <td>30%이내</td> <td>4%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- 별정직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 분</th> <th>5급상당</th> <th>6급상당</th> <th>7급상당</th> <th>8급상당</th> <th>9급</th> </tr> <tr> <th>기준비율</th> <td>0%</td> <td>38%이내</td> <td>38%이내</td> <td>24%이상</td> <td>0%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</p>	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기준비율	1%이내	7%이내	21%이내	32%이내	27%이내	12%이상	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	기준비율	4%이내	12%이내	50%이내	30%이내	4%이상	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	기준비율	0%	38%이내	38%이내	24%이상	0%	<p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</p> <p>- 일반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 분</th> <th>4급이상</th> <th>5급</th> <th>6급</th> <th>7급</th> <th>8급</th> <th>9급</th> </tr> <tr> <th>기준비율</th> <td>1%이내</td> <td>7%이내</td> <td>21%이내</td> <td>31%이내</td> <td>29%이내</td> <td>11%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, 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.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- 기능직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 분</th> <th>6급</th> <th>7급</th> <th>8급</th> <th>9급</th> <th>10급</th> </tr> <tr> <th>기준비율</th> <td>5%이내</td> <td>20%이내</td> <td>56%이내</td> <td>19%이상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- 별정직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 분</th> <th>5급상당</th> <th>6급상당</th> <th>7급상당</th> <th>8급상당</th> <th>9급상당</th> </tr> <tr> <th>기준비율</th> <td>0%</td> <td>38%이내</td> <td>38%이내</td> <td>24%이상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</p>	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기준비율	1%이내	7%이내	21%이내	31%이내	29%이내	11%이상	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	기준비율	5%이내	20%이내	56%이내	19%이상		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	기준비율	0%	38%이내	38%이내	24%이상	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비율	1%이내	7%이내	21%이내	32%이내	27%이내	12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비율	4%이내	12%이내	50%이내	30%이내	4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비율	0%	38%이내	38%이내	24%이상	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비율	1%이내	7%이내	21%이내	31%이내	29%이내	11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비율	5%이내	20%이내	56%이내	19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비율	0%	38%이내	38%이내	24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별표 3]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계	1,274	1,274				총계	1,274	1,274			
정무직	1	1				정무직	1	1			
일반직계	<u>1,004</u>	<u>1,004</u>				일반직계	<u>1,019</u>	<u>1,019</u>			
3급	1	1	-	-	-	3급	1	1	-	-	-
4급	7	5	1	1	-	4급	7	5	1	1	-
5급	60	29	2	11	18	5급	60	29	2	11	18
6급이하	<u>936</u>	<u>936</u>				6급이하	<u>951</u>	<u>951</u>			
별정직계	<u>13</u>	<u>13</u>				별정직계	<u>11</u>	<u>11</u>			
기능직계	<u>256</u>	<u>256</u>				기능직계	<u>243</u>	<u>243</u>			